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규정하고,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정비 (안 제2조, 제6조)
-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개정 (안 제3조)
 - 70세 이상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70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영동군 거주기간이 긴 사람

제6조제1항 본문 중 “검토하여 보청기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을 “확인한 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u>장애인보장구에</u>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u>70세</u> 이상인 사람</p> <p>2.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 ----- ----- ----- <u>장애인 보조기기</u>----- ----- -----.</p> <p>제3조(지원 대상) ① ----- ----- ----- -----.</p> <p>1.----- ----- ----- ----- <u>65세</u>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4. 고령자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군 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4.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영동
군 거주기간이 긴 사람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

---- 확인한 후 -----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0. 24.>

②-⑦ (생략)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5.(생략)